



##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기준

### 목적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ow-Risk Outdoor Arts and Entertainment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19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임시 지침"은 야외 동물원, 식물원 및 기타 관련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체 및 단체의 소유자/운영자 및 그들의 직원, 계약자, 벤더, 고객/방문객에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침은 야외 동물원, 식물원, 자연공원, 사적지 및 문화 기관 부지, 야외 박물관, 야외 농촌 체험 관광/농업 시범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활동을 포함한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관과 관련된 소매 또는 기념품 가게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체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소매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모든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레스토랑과 바는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모든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은 실내 박물관, 사적지, 수족관 및 기타 관련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보건부 지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특정 지역에서 유효한 비필수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공공 오락장(예: 놀이공원, 워터 파크, 카니발), 콘서트 또는 공연 예술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발행 시점에 폐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소유주/운영자는 추가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발표 당시의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모든 운영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공표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을 따르는 것 외에도,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건부 발행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저위험 야외 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적용됩니다. 야외 예술 및/또는 엔터테인먼트

소유자/운영자 또는 야외 예술 및/또는 엔터테인먼트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할 것을 책임집니다.

사무실 기반 업무 활동(예: 동물원 백오피스)과 관련된 안전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사무실 기반 업무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인력과 고객/방문자 인원이 모든 주어진 시간에 특정 지역에 대한 최대 점유 인원 또는 수용 인원의 **33%** 이하로 제한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방문자도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은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쓰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장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단, 고객/방문자가 만 2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그러한 가리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야외 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화장실, 지불 장소에 접근하거나 비상사태의 경우 실내 공간을 통해 들어가거나 나가야 할 수 있는 고객/방문자를 수용할 제한된 실내 수용 인원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입장과 퇴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포함한 개인 간에 항상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가구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그룹이 야외 예술 및/또는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 안전상 또는 핵심 활동에 더 짧은 거리(예: 금전 등록기 작동, 물체 이동 및 들어 올리기, 엘리베이터 사용)가 필요한 경우, 개인은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직원들은 고객/방문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때(예: 티켓 판매)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의 **6피트** 내에 있을 때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면 가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보호대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표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없거나 고객/방문자와 상호 작용할 때 공유 공간과 일반적인 상황(예: 전시 투어, 공용 공간 통과)에서 안면 가리개가 필요함을 직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피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하거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 또는 물리적 장벽(예: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달리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에서 플라스틱 차폐벽)을 제공하고 사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계산대 등록기, 인포메이션 부스, 티켓 키오스크에 직원과 고객/방문자 사이의 물리적 장벽을 세워야 하며, 직원들은 고객/방문객과 상호 작용할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직원실, 금전 등록기 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인원이 공간 또는 차량 최대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기).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시품이 좁은 지역에 있는 경우, 각 지역 또는 전시의 최대 수용 인원을 계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인도, 산책길,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구역(예: 티켓 줄, 전시품 앞, 출퇴근 스테이션, 건강 선별 스테이션)에 **6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일방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혼잡한 전시회에서 **6피트** 떨어져 전시품을 볼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모일 수 있는 모든 공용 좌석 공간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떨어져 있도록 좌석 공간 배치(예: 의자, 테이블)를 변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무접촉 지불 옵션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가능한 경우 미리 지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 카드, 리워드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취급을 최소화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고객/방문자가 온라인으로 티켓을 미리 구매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소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개인에게 다음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무르도록 알립니다.
  -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알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도록 알립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알립니다.
-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시품이나 물건을 만지거나 취급하지 않도록 알립니다.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직원 모임(예: 직원회의)을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개인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및 공용 구역을 폐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장비 앞에서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 및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공용 화장실에 있는 동안 고객/방문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통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 식사, 교대근무 시작/중지) 시 사회적 거리두기(즉, 6피트 공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 C. 직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합니다.
  - 직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소.
  - 교대근무 설계(예: ,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 및/또는
  - 전화기, 라디오, 복사기, 프린터, 등록기와 같은 공유 장비를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지키는 절차 개발, 사용 사이에 공유 장비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교대로 입장 및 출발하여 밀집을 막도록 티켓을 발행할 때 특정 방문 시간 시행을 고려(예: 시간이 지정된 출입구와 출구)해야 합니다.

##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 인원 요구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시설과 전시로의 통행량 및 시설과 전시 내의 통행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별도의 출구와 입구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신호 및/또는 대기열 제어 장치(예: 기둥, 줄 거리 마커, 화살표)를 사용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외부 고객/방문자를 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극대화하고 해당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방문자 대기 구역(예: 줄, 주차 구역)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 작용(예: 교대근무를 끝내고 떠나는 개인의 출구 및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개인의 입구 별도 지정) 및 이동을 제한(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머물러야 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1) 현장 또는 모든 빌딩으로의 이동 흐름을 관리하고 점유/수용 인원 제한을 모니터링하고 (2) 화재 안전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건강 선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구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선별을 위해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줄을 설 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머물러 있는 무접촉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 절차 동안 예상 활동에 허용 가능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최소한 안면 가리개 등)를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품의 화물을 옮기기(예: 배송 운전자로부터) 전후에 직원이 손을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품을 적재하기 시작 전에 손을 소독하고, 모든 물품을 적재한 후 다시 손을 소독하여 마무리).
-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 지도, 팜플렛, 가이드 등을 고객/방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그러한 항목이 사용되는 경우). 또한 시행 가능한 경우 개인용 전자 장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회용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재사용 가능한 물체를 사용 후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물리적 지도가 아닌 디지털 지도(예: 휴대전화용)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사용 후 적절하게 소독할 수 있거나 고객이 자신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방문자를 위한 오디오 헤드셋 및 기타 장비의 대여 또는 렌탈을 중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위험 상호 작용 전시(예: 고객/방문자가 물건을 만지거나 착용해야 하는 전시)를 폐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방문자 모두를 포함하여 당시의 최신 사회적 모임 요구사항에 따른 최대 수용 인원으로 동일한 가정 또는 단체 구성원들의 그룹 투어만 허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 공간 또는 놀이기구가 있는 전시물을 폐쇄하십시오. 단, 해당 구역 또는 전시를 같은 가족이나 단체 구성원이 아닌 각 어린이가 구역을 사용한 사이에 청소, 소독, 살균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피크닉 구역과 벤치를 6피트 간격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폐쇄합니다.
  - 필요에 따라 직원 또는 경비 배치를 강화하여 모임 규모에 제한을 시행합니다.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장소/현장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방문자가 만 2세 이상이고 그러한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공용 구역 또는 상황에 있을 때마다(예: 시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에워싸인 작은 전시를 통과하거나 직원과 상호 작용), 또 자신의 가족 구성원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의 6피트 이내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고객/방문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고객/방문자가 만 2세 이상이며 그러한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다른 사람의 6피트 이내에 들어갈 때마다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피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방문자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티켓 및 접수 데스크에 실행 가능한 경우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물리적 장벽(예: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퀵 컷,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 소재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사항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에 N95 마스크가 전통적으로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전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전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예: 전시 관리, 동물 관리)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보호가 잘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전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쓰고, 벗고, 청소(해당하는 경우)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장치 및 장비와 같은 물체의 공유와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 물체 또는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직원에게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과 고객/방문자가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용: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공용 구역(예: 입구, 출구, 전시 및 보안/접수 데스크)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소독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장소/현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손잡이, 티켓 카운터)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 사용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교대근무,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워크스테이션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도구 세트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이동이 많은 구역(예: 엘리베이터, 공유 물체, 건물 입구, 신분증 스캐너, 화장실, 난간, 손잡이,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리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및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 물체(예: 지불 장치), 영역 및/또는 표면(예: 문) 취급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영역과 물체를 최소한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또는 고객/방문자 간에 공유되는 장비 또는 물건(예: 라디오, 지도)을 매 사용 후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간 음식 및 음료 공유를 금지하고, 직원에게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수, 시간 및 고객/방문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고객/방문자를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과 고객/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개인에게 상기시키도록 건물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에게 향후 접촉 추적이 필요할 경우를 위한 연락처 정보를 제출할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 III. 절차

###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일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하지만, 고객/방문자 및 배송 직원에게 이러한 선별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 선별 관행은 직원이 건물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직원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에 대해 선별이 필요하며, 근로자, 계약자 또는 벤더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의 증상이 있었음.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선별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간 및/또는 건물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 또는 입구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및/또는 건물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합니다.
- 원격으로 선별하거나 도착 시 선별된 직원만 입장시키십시오.
- 체온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물 입구에서 비접촉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하여 추적관찰 선별을 완료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건강 스크린을 작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없지만, 고객/방문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되고 접촉 추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도록 고객/방문자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지 외에도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체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현장에 진입하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계약자, 벤더 또는 방문자/고객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직원, 계약자, 벤더, 고객/방문자는 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교대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모든 직원의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직원 및 고객/방문자가 후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기관에 대해 식별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각각의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방문자를 위해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직장 또는 구역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계약자 및 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고객/방문자 및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직원이 코로나19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방문자가 건강 스크린을 작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자신의 장소 직원, 계약자 또는 벤더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직원, 계약자, 벤더 또는 고객/방문자가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직장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해당 개인이 처음 코로나19 증상을 느끼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시점(둘 중 이른 시점) 이전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들어온 기록된 모든 직원, 계약자, 벤더 및 고객/방문자와 배송 직원(해당하는 경우)을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장에 있는 동안 개인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 지역의 직원에게 즉시 건물 전체에서 해당 개인이 있었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그들의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고객/방문자가 접촉 추적 프로그램에 사전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예: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때 사전동의).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